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3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김 건·홍기원·김영배
조정식·권철승·김기웅
김미애·조경태·추경호
김용태·이성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대표·특별사절의 임명·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미승인 국가·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의 경우 현행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

서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상교섭의 경우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교교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특별사절의 임명·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등).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를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와”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를 “외국정부등에 전하거나 외국정부등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를 “외국정부등과의”로 한다.

제4조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를 “외국정부등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를 “외국정부등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에 외교교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u>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와</u> ----- ----- ----- ----- ----- <u>외국정부등에 전하거나 외국정부등과</u> ----- ----- ----- ----- ----- -----.
<신 설>	제1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제3조(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제3조(외교부장관) -----

<u>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u>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 부대표가 된다.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 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 狀)을 접수한 <u>외국정부 또는</u> <u>국제기구와</u> 교섭을 할 때 정부 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정 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u>외국정부 또는</u> <u>국제기구와</u>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 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 조 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 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 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u>외국정부등과의</u>----- ----- ----- -----. 제4조(재외공관의 장) ----- ----- ----- -----<u>외국정부등과</u> ----- -----.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① - ----- ----- -----<u>외국정부등과</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 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④</u> (생 략)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에 외교교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한다.</u>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